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한정애·박홍배·송옥주

김주영 · 강훈식 · 정성호

부승차 • 장철민 • 서영교

신영대 · 박홍근 · 이병진

이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,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,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 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. 결국,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

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"노무제공자", "사업주", "온라인 노무제 공 플랫폼", "플랫폼 운영자" 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).
- 나.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,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,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).
- 다.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·납부하도록 함(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2(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2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

- 제100조의6(노무제공자 등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노무제공자"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(이하 "노무제공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
 - 나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- 2. "사업주"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무제 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"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

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. 다만, 사업주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은 제외한다.

- 4. "플랫폼 노무제공자"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.
- 5. "플랫폼 이용 사업주"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한다.
- 6. "플랫폼 운영자"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 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다.
- 제100조의7(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) ①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.
 -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

요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,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- 제100조의8(플랫폼 이용계약 신고 및 원천징수 등)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 - 2.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제공 플 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
 - 3.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 보
 - 4.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·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 -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따라야 한다.
 -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

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, 노무제공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, 노무제공 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 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.
-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·상실 등의 신고와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0조의9(준용 및 적용) 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. 이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"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"는 "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"로, 제12조제1항제3호의 "사용관계가 끝난 때"는 "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때"로 본다.

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, 연금보험료의 부담·징수, 급여, 수급권,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제1항,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, 제4장, 제5장, 제7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.

제122조제1항 중 "사용자, 가입자"를 "사용자, 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. 가입자"로 한다.

제1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95조제2항"을 "제95조제2항(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, "사용자"를 "사용자,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119조"를 "제119조(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, "근로자가"를 "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(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"로, "근로자의"를 "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"로, "사용자"를 "사용자 또는 사업주"로 한다.

1의2.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·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

제1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

"사용자"를 "사용자,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2항(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1의2.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않은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로서 제5장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장의2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
	<u>특례</u>
<u><신 설></u>	제100조의6(노무제공자 등의 정
	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
	의 뜻은 다음과 같다.
	1. "노무제공자"란 제3조제1항
	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
	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
	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
	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
	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
	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
	는 계약(이하 "노무제공계약"
	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람으
	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
	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.
	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
	종에 종사할 것
	<u>나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</u>
	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
	<u>것</u>
	2. "사업주"란 노무제공자와 노
	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

<u>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</u> <u>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</u> <u>말한다.</u>

- 3. "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"이 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 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 다. 다만, 사업주의 노무제공 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 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 스템은 제외한다.
- 4. "플랫폼 노무제공자"란 온라 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를 말한다.
- 5. "플랫폼 이용 사업주"란 플 랫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한 다.
- 6. "플랫폼 운영자"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중 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00조의7(노무제공자 등의 사 업장가입자 특례) ① 제8조제1

<신 설>

항 본문 및 제9조 본문에도 불 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.

-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 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 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. ④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
- (4) 도구세당사와 사업구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,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 제100조의8(플랫폼 이용계약 신

 고 및 원천징수 등) ① 플랫폼

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

 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이

<신 설>

- 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 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 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 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 한 날 또는 종료한 날
- 3.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 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4.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 ·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 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
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 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, 노무제공 대가 등에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렁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.
-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, 노무제공 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

<신 설>

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 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 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.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 격 취득·상실 등의 신고와 연 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제100조의9(준용 및 적용) ① 노 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 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시기 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1조제 1항제1호의 "제8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"는 "노무제공계약의 개시 일"로, 제12조제1항제3호의 "사 용관계가 끝난 때"는 "노무제 공계약이 끝난 때"로 본다.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 업장가입자의 자격, 연금보험료 의 부담ㆍ징수, 급여, 수급권, 제122조(조사·질문 등) ① 공단 저 은 가입자의 자격, 기준소득월 액,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 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・변경・소멸・정 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,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 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· 재산 등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 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	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	에
	관하여 제1항, 제100조의7	및
	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	제
	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	아
	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, 제4	장 <u>,</u>
	제5장, 제7장 및 제8장을 준	용
	<u>한다.</u>	
4]]122조(조사·질문 등) ①	
	사용	<u>자,</u>
	<u>사용</u> 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	
		따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	<u>따</u> 같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	파 같 임6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	사업주(제100조의6제2호에 른 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다), 플랫폼 운영자(제100조의 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	<u> 따</u> 같 임6 를

- ②·③ (생 략) 제128조(벌칙) ①·② (생 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
 자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세128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슬)
③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
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
제100조의6제4호·제5호에 따
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
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
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
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
공제한 플랫폼 운영자
2. 제95조제2항(제100조의9제2
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
<u>한다)</u>
사용자, 사업주 또는 플랫폼
우여자

3.	제119	<u>)조</u> 를	위반히	라여 <u>급</u>	- 로	<u>-</u> 자
<u>フ</u> }	<u>·</u> 가'	입자로	되는	것을	빙	-해
히	거나	부담	금의 즉	증가를	기	피
할	목	적으로	정당	한 사	유	없
0	근 :	로자의	승급	또는	임	금
인	상을	하지	아니	하거나	하	고
니	- ユ	밖의 를	불리한	대우	를	한
시	용자					

4. (생략)

제13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.

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2.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

3. 제119조(제100조의9제2항에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<u>다)</u>
는 노무제공자(제100조의6제1
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
<u>다. 이하 같다)가</u>
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
<u>의</u>
기수리 ㅠㄴ 기시ス
<u>사용자 또는 사업주</u>
<u>사용사 또는 사업구</u> 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 제131조(과태료) ①

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·질문을 할 때 이를 거 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거짓으 로 답변한 <u>사용자</u>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제23조제2항</u>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
- 3. (생략)
- ③ (생 략)

<u>사용자, 사</u>
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
②
1. (현행과 같음)
2. 제23조제2항(제100조의9제2
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
<u>한다)</u>
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